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88
----------	-----

제출연월일 : 2008. 1. 11.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2012년 새주소 의무사용에 대비한 도로명의 부여·변경 사항 등 도로명사업 본연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친 도로명 부여 및 변경 대상 중 미협의를 도로명은 대전광역시에서 결정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함(안 제5조).
- 다. 각종 교육·행사 등에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하여 버스정류장,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도로명사업의 법령이 「대전광역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 차원에서 폐지함(안 부칙 제2조).
- 바. 대전광역시에서 운영중인 조례 중 사무실 위치 등의 표시가 있는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안 부칙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 나. 합 의 : 관련부서 합의완료
- 다. 기 타
 -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2) 입법예고 : 2007. 11. 30. ~ 12. 20. / 의견접수 없음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대상 도로의 현황 제공) ①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3항의 규정과 관련된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현황(명칭, 구간, 폭, 설치·관리자, 관련 자치구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현황에 관한 자료를 매년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해당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현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이 연도 중에 확정 또는 공고되거나 통보된 내용과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계획이 확정 또는 공고된 날이나 통보된 내용과 다른 것을 발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협의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3조(도로구간의 설정 등) ①시장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새주소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연장, 폭, 기·종점 및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도로구간의 설정 및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구청장의 의견
4. 도로구간의 설정·변경,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예측성, 도로명주소의 영속성 등에 대한 시장의 의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심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개별 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도로명주소의 홍보) 시장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주소의 교육) ①시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새주소안내표지판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2. 다중이용시설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 방식 도입
3. 기관·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새주소위원회) 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명사업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장동 25-5번지”를 “금병로 506(장동)”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구성동 21-1번지”를 “대학로 407(구성동)”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송강동 200-2번지”를 “대덕대로 1225(송강동)”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갈마동 413번지”를 “갈마울2길 134(갈마동)”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둔산동 1420번지”를 “향촌길 70(둔산동)”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월평동 160-20번지”를 “월평본1길 39(월평동)”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만년동 396번지”를 “둔산대로 99(만년동)”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문화동 145-3번지”를 “한밭도서관길 222(문화동)”로 한

다.

제48조제2항중 “사정동 산1-4번지”를 “보문산1길 800(사정동)”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중 “노은동 566번지”를 “노은동길 21(노은동)”로 한다.

제57조제2항중 “오정동 705번지”를 “한밭대로 450(오정동)”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중 “하소동 산47-4번지”를 “푸른학습원길 26(하소동)”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중 “부사동 162-1번지”를 “대중로 111(부사동)”로, “노은동 270번지”를 “월드컵길 51(노은동)”로 한다.

제66조제2항중 “장안동 259번지”를 “장안길 353(장안동)”으로 한다.

제69조제2항중 “만년동 396번지”를 “둔산대로 89(만년동)”로 한다.

제72조제2항중 “둔산동 1420번지”를 “향촌길 70(둔산동)”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중 “만년동 396번지”를 “둔산대로 111(만년동)”로 한다.

제78조제2항중 “문화동 1-27번지”를 “중앙로 50(문화동)”으로 한다.

제81조제2항중 “지족동 920번지”를 “노은동길 100(지족동)”으로 한다.

별표 1중 “삼성2동 322-4”를 “대전로 240(삼성동)”으로, “갈마동 343-58”을 “갈마중앙길 52(갈마동)”로, “법동 310-2”를 “계족로 864(법동)”로, “도룡동 3-1”을 “대덕대로 546(도룡동)”으로, “복수동 292-13”을 “복수중앙길 10(복수동)”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중 “중리동 20-1”을 “선비마을길 20(중리동)”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중 “송촌동 236-3”을 “다롱고개길 76(송촌동)”으로, “월평동 51-1”을 “성본길 41(월평동)”로, “용호동 64”를 “용호길 105(용호동)”로 한다.

별표 2 제3호중 “가양동 418-9”를 “자양로 620(가양동)”으로, “오류동 184-19”를 “오류로 81(오류동)”로, “갈마동 427-55”를 “신갈마로 45(갈마동)”로, “어은동 109”를 “대학로 243(어은동)”으로, “오정동 490-19”를 “대덕구청2길 5(오정동)”로 한다.

별표 2 제4호중 “송촌동 236-3”을 “다롱고개길 76(송촌동)”으로 한다.

②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신성동 7-13번지”를 “과학로 137(신성동)”로 한다.

③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대화동 3의3번지”를 “공단중앙길 8(대화동)”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중 “둔산동 1420번지”를 “향촌길 70(둔산동)”으로 한다.

⑤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둔산동 1420번지”를 “향촌길 70(둔산동)”으로 한다.

⑥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갈마동 820-1번지”를 “갈마공원7길 59(갈마동)”로 한다.

⑦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부사동 162-1번지”를 “대중로 111(부사동)”로, “내동 220-8번지”를 “갈마도서관길 94(내동)”로, “덕명동 산10번지”를 “승마장길 77(덕명동)”로, “노은동 270번지”를 “월드컵길 51(노은동)”로 한다.

⑧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중 “문화동 145-3번지”를 “한밭도서관길 222(문화동)”로 한다.

⑨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중 “산성동 120-4번지”를 “한밭도서관길 655(산성동)”로 한다.

⑩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사정동 200번지”를 “까치재길 83(사정동)”으로 한다.

⑪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침산동 산21, 22-2번지”를 “방아미길 70(침산동)”으로 한다.

⑫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만년동 396번지”를 “둔산대로 133(만년동)”으로 한다.

⑬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별표중 “갈마동 321-1번지”를 “갈마울3길 45(갈마동)”로, “법동 439-4번지”를 “선비마을뒷길 184(법동)”로, “은행동 142-6”을 “으능정이3길 7(은행동)”로, “문평동 79-2”를 “3공단3길 9(문평동)”로 한다.

⑭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괴곡동 산55번지”를 각각 “상보안윗길 61(괴곡동)”로, “정림동 산2-3번지”를 “명암2길 88(정림동)”로 한다.

⑮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대흥동 311-1번지”를 “데미길 85(대흥동)”로 한다.

⑯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용계동 319-1”을 “밀머리1길 80(용계동)”으로, “산성동 20-18”을 “유등천변6길 88(산성동)”로 한다.

⑰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방현동 30-2”를 “금병로 622(방현동)”로 한다.

⑱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학하동 682의 4번지”를 “황새고개길 29(학하동)”로 한다.

⑲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장안동 산48번지”를 “장안길 353(장안동)”으로 한다.

[별지 서식]

도로구간 및 도로명 협의 신청서		처리기간
		37일
대상도로	기 점	
	종 점	
	너 비(m)	
	연 장(m)	
도로명 현 황	명 칭	
	부여일자	
	부여사유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변경에 관한 구청장의 의견		
<p>「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제7조제3항, 「대전광역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간(도로명)의 협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구청장 (직인)</p> <p>대전광역시장 귀하</p> <p>첨부 : 관련 도면 부</p>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관계 법령

① 조례안 제2조(협의대상 도로의 현황 제공) 내지 제3조(도로구간의 설정 등) 관련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도로구간의 설정) ⑤ 시장등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도로구간의 설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도로명의 부여 등) ③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장등 사이 또는 시·도지사 사이에 동일한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동일한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례안 제5조(도로명주소의 홍보) 관련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도로명사업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조례안 제6조(도로명주소의 교육)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1.29>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4 조례안 제8조(새주소위원회) 관련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시·도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법 제5조·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도 집행계획의 수립,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내용 등을 심의하고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새주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④위원은 도로명사업과 관련되는 기관의 관계공무원과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시·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도의 집행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설정·변경 및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3. 시·도통합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시·도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 중 “중앙위원회”는 “시·도위원회”로,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⑦시·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5 조례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관련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과 「대전광역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비교

구 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2006.10.04 법률제정]	대전광역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1983. 2. 9 조례제정]	비교판단
법률 조례의 제정 목적	<p>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 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유지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내 간선망을 이루는 가로에 고유의 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의 가로 사용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명부여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p>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p>법률 제8조(도로명부여 등) ①시장등은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조사 2. 도로구간의 설정 3. 도로명의 부여방법 및 부여 4. 건물번호의 부여방법 및 부여 5.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대장의 작성 및 비치 6. 도로명판의 제작·설치 7.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p>시행령 제6조(도로구간의 설정) ①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여야 하는 도로는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노(路)·길로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로 : 도로의 폭이 40미터 또는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 중 도로의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 2. 노(路) :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 또는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 중 도로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도로 3. 길 : 대로와 노 외의 도로 	<p>제2조(대상가로) 가로명을 부여하는 가로는 간선 가로 및 이와 연결되는 주된 가로로 한다.</p>	<p>도로명부여 및 도로구간별 기준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p>
도로명 부여 방법	<p>시행령 제7조(도로명의 부여 등) ①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새주소</p>	<p>제3조(가로명 선정과 고시) ①가로명은 지리적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적 특성을 참하여 정한다.</p>	<p>도로명의 부여 및 변경 방법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p>

구 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2006.10.04 법률제정]	대전광역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1983. 2. 9 조례제정]	비교판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시장등은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역주민의 의견 및 지명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가로명은 범시민적 의사를 집약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과 공청회를 거쳐 지명 위원회의 최종심의로 제정하여 시장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법률에서 규정
도로표지판	<p>시행령 제9조(도로명시설의 제작·설치 및 관리 등)①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시설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p> <p>도로표지규칙(건설교통부령)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의 종류·규격 등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도로교통과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표지판 설치) ①가로명이 정하여진 가로의 구간에는 가로명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표지판 설치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도로명시설물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음</p> <p>도로표지의 설치·제작·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도로표지규칙으로(건설교통부령)규정</p>
도로명 사용	<p>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4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개별 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p>	<p>제5조(가로명 사용) ①가로명이 정하여진 가로는 가로명을 사용한다.</p> <p>②차량의 행선표시, 노선표시, 기타 행정상 필요한 때에도 이 가로명을 사용한다.</p>	<p>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로 도로명 사용의무 규정 신설</p>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년 1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월 11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8년 1월 14일
3. 상 정 일 자 : 제17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8. 1. 24)
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낙현)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2012년 새주소 의무사용에 대비한 도로명의 부여·변경 사항 등 도로명 사업 본연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친 도로명 부여 및 변경 대상 중 미협업의 도로명은 대전광역시에서 결정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함(안 제5조).
- 다. 각종 교육·행사 등에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하여 버스정류장,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 시설에 새주소안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도로명사업의 법령이 「대전광역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 차원에서 폐지함(안 부칙 제2조).
- 바. 대전광역시에서 운영중인 조례 중 사무실 위치 등의 표시가 있는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안 부칙 제3조).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박춘용)

○ 본 제정 조례 안은

2012년 새주소 의무사용에 대비한 도로명의 부여·변경 사항 등 도로명사업 본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먼저, 본문 제9조와 부칙으로 축조되어 있는 조례 안의 주요내용

을 살펴보면,

조례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서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 및 생활화 시책 추진 등의 의무 부여에 관한 사항을, 조례 안 제8조에서는 새주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으로 「대전광역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내용 중 주소가 포함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19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본 조례 안 검토결과

도로명주소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등에 근거하여 법령에 중복된 내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자치법규 성문에 필요한 조문만을 반영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법적 근거나 타당성 및 조례 안 축조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다만,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도로명시설의 광고의 경우 자치구청장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법률개정 건의 등을 통하여 시장도 광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IV. 토 론 요 지 : 생 략

V. 질의답변요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